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9. 1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99. 11.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가. 제안이유

- 본 노선(계수대로)은 시흥시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서울시계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금년 개통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야 IC에 연결되는 건교부지정 광역도로로서
-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원 50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 개설되어 금번 본 계수대로를 개설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최종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폭원이 협소하고 통행교통량이 매우 과중한 포화상태로, 이에 접속시 오히려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현행노폭 50m를 30m로 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며,
- 노폭축소는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기존 선형을 고려, 기정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노폭 좌·우측을 각각 10m씩 줄여 50m에서 30m로 변경하고, 범박로(대3~10호선)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구간 중 시흥시계~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우리 시 외곽주변에 위치한 범박, 계수동(일명 : 신양촌) 주민들이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미개설된 본 계수대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 기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현행 노폭 50m를 30m로 변경하고, 범박로와 교차되는 지점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구간 중 시흥시계~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을 교통광장으로 신설하여 조기 개설함으로써 낙후된 신양촌 지역의 접근도를 확보,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다.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선도로는 어느 지역의 도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지역의 도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폭 50미터 계획시 추정예산액과 30미터로 계획시 추정예산액의 차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노폭 50미터 계획시 추정금액을 잘못하여 30미터로 노폭을 축소하여도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350억원 정도 추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폭을 30미터로 할 경우 범박동의 재개발 등으로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교통난을 겪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폭을 부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50미터로 계속하여 시설을 원하고 있으나 이 도로는 전교부 광역도로로서 서울시와 시흥시에서 30미터로 시설을 원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줄이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서 채택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서

의안번호	237	안건명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제출자	부천시장	의결년월일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99. 11. 12)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개수대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폭원을 당초 50미터로 결정하여 추진 중 최종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폭원이 30미터로 협소하여 통행 교통량이 매우 가중한 포화상태로서 접속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도 노폭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측을 각각 10미터씩 줄여 30미터로 변경코자 하나 향후 범박동 지역의 재개발로 통행차량이 증가시 몇 년 후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도로의 폭을 확장코자 하여도 토지보상비 등이 현재보다 상당하여 확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당장 50미터로 건설사업이 원활치 않더라도 기존 50미터의 노폭 계획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노폭 30미터의 축소 변경결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임.

1999년 11월 12일

부천시의회의장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237호
의결년월일	99. 11. 12 (제74회)

제출년월일 : 1999. 11. 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사유

- 본 노선(개수대로)은 시흥시계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서울시계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금년 개통 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야I·C에 연결되는 진교부지정 광역도로로서
-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원 50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금번 본 개수대로를 개설코자 실시설계승인을 수행하던 중 최종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폭원이 협소하고 통행 교통량이 매우 과중한 포화상태로 이에 접속시 오히려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현행노폭 50m를 30m로 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며,

- 노폭축소는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기존 선형을 고려, 기정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노폭 좌·우측을 각각 10m씩 줄여 50m에서 30m로 변경하고, 범박로(대3~10호선)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구간 중 시홍시계~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 시 외곽주변에 위치한 범박, 계수동(일명 : 신양촌) 주민들이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미개설된 본 계수대로를 조기 개설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 기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현행 노폭 50m를 30m로 변경하고, 범박로와 교차되는 지점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본 노선구간 중 시홍시계~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을 교통광장으로 신설하여 조기 개설함으로써 낙후된 신양촌 지역의 접근로를 확보,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사용형태	기능	결 정 구 간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기정	광로	2	2	50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1,633	범박동 (서울시계)	계수동 (시홍시계)	
변경	대로	2	9	30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791	범박동 산24	범박동 (서울시계)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변경	공원	교통광장	시홍시계~범박동 산24번지	46,832	

□ 변경결정사유

- 본 계수대로 노선은 시흥시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되는 건교부 지정 광역도로로서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지역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폭원 50m의 도로로 결정되었으나,
- 미개설되어 금번 본 계수대로를 개설코자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 최종 접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가 폭원이 협소하고 통행교통량이 매우 과중한 포화상태로서 접속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 이를 해소키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폭원을 현행 50m에서 30m로 기존 노선의 선형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본 노선구간 중 시흥시계~범박동 산24번지 구간은 범박로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교통광장으로 결정하여 낙후된 범박동, 계수동 지역의 접속도로를 확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폭원변경은 기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노폭 좌·우측을 각각 10m씩 축소, 30m로 변경하여 민원을 예방코자 함.

□ 참고사항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사업기간 : 99~2002. 12
- 추정사업비 : 497억원(지선도로 포함 사업비)
 - 공사비 : 280억원
 - 보상비 : 217억원
- 국비지원금 : 계수대로 본선 총사업비 350억(추정)의 50%
- 광역도로 지정일 : 1998년 11월
- 계수대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 : 99. 6. 10~2000. 1. 5
- 결정권자 : 경기도지사

위 치 도

